|  |  |  |
| --- | --- | --- |
| **기업경영 이상명부 관리 잠행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8호  <기업경영 이상명부 관리 잠행방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  2014년 8월 19일  **제1조** 기업경영 이상명부 관리를 규범화 하고, 공평경쟁 보장, 기업의 신의성실 자율 촉진, 기업신용 규제 강화, 거래의 안전 보호 및 사회 감독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안> 등 행정법규와 국무원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경영상 이상상황이 있는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공시의무 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경영이상명부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해당 부문이 등기한 기업의 경영이상명부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1)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8조의 규정된 기한에 따라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명령을 내린 기한 내 유관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시된 기업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날조한 경우  (4)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하는 경우, 등재결정을 내리고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할 정보를 해당 기업의 공시정보에 기록해야 하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등재결정에는 기업명칭, 등기번호, 등재일자, 등재사유, 결정을 내린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 기업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도보고를 송달하여 사회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당해 연도보고 공시종료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경영이상명부의 등재를 결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제7조** 기업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서면으로 명령을 내려 10일 내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명령을 내린 기한만료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경영이상명부의 등재를 결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를 전개하거나 신고에 근거하여 기업공시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날조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이 규명된 날로부터 10 업무일 내 경영이상명부의 등재를 결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제9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한 과정을 이행하는 중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기업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사실이 규명된 날로부터 10 업무일 내 경영이상명부의 등재를 결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우편전용서한방식을 통하여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이 등기한 주소 또는 경영장소로 2회 우편발송을 했음에도 수령하여 서명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2회 우편발송의 시간간격이 15일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등재일로부터 3년 내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재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경영이상명부상 정보 삭제(移出)를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삭제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삭제결정에는 기업명칭, 등록번호, 삭제일자, 삭제사유, 결정을 내린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미신고연도의 연도보고를 보충하여 보고하고 공시한 후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를 신청하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업무일 내 삭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2조**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공시의무를 이행한 후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업무일 내 삭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조** 본 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공시된 정보를 수정한 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실을 규명한 날로부터 5업무일 내 삭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주소 또는 경영장소의 등기변경을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기업이 등기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어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실을 규명한 날로부터 5 업무일 내 삭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전 60일 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고방식으로 관련의무 이행을 알려야 하며; 3년이 만료되어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엄중히 법을 위반한 기업명단에 등재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된다.  **제16조**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내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5 업무일 내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수리하는 경우, 20 업무일 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실확인을 통해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한 것이 착오였음을 발견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날로부터 5 업무일 내 이를 수정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은 경영이상명부에서 등재, 삭제되는 결정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본 방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개정명령을 내리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9조** 경영이상명부 관리 관련 문서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2월 24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23호 발표한 <기업연도검험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8号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已经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10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4年8月19日  **第一条**　为规范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保障公平竞争，促进企业诚信自律，强化企业信用约束，维护交易安全，扩大社会监督，依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等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工商行政管理部门将有经营异常情形的企业列入经营异常名录，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提醒其履行公示义务。  **第三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指导全国的经营异常名录管理工作。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负责其登记的企业的经营异常名录管理工作。  **第四条**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将有下列情形之一的企业列入经营异常名录：  　　（一）未按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第八条规定的期限公示年度报告的；  　　（二）未在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第十条规定责令的期限内公示有关企业信息的；  　　（三）公示企业信息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  　　（四）通过登记的住所或者经营场所无法联系的。  **第五条**　工商行政管理部门将企业列入经营异常名录的，应当作出列入决定，将列入经营异常名录的信息记录在该企业的公示信息中，并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统一公示。列入决定应当包括企业名称、注册号、列入日期、列入事由、作出决定机关。  **第六条**　企业未依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第八条规定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在当年年度报告公示结束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将其列入经营异常名录的决定，并予以公示。  **第七条**　企业未依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第十条规定履行公示义务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书面责令其在10日内履行公示义务。企业未在责令的期限内公示信息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在责令的期限届满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将其列入经营异常名录的决定，并予以公示。  **第八条**　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开展抽查或者根据举报进行核查查实企业公示信息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应当自查实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将其列入经营异常名录的决定，并予以公示。  **第九条**　工商行政管理部门在依法履职过程中通过登记的住所或者经营场所无法与企业取得联系的，应当自查实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将其列入经营异常名录的决定，并予以公示。  　　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通过邮寄专用信函的方式与企业联系。经向企业登记的住所或者经营场所两次邮寄无人签收的，视为通过登记的住所或者经营场所无法取得联系。两次邮寄间隔时间不得少于15日，不得超过30日。  **第十条**　被列入经营异常名录的企业自列入之日起3年内依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规定履行公示义务的，可以向作出列入决定的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移出经营异常名录。  　　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将企业移出经营异常名录的，应当作出移出决定，并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移出决定应当包括企业名称、注册号、移出日期、移出事由、作出决定机关。  **第十一条**　依照本办法第六条规定被列入经营异常名录的企业，可以在补报未报年份的年度报告并公示后，申请移出经营异常名录，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作出移出决定。  **第十二条**　依照本办法第七条规定被列入经营异常名录的企业履行公示义务后，申请移出经营异常名录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作出移出决定。  **第十三条**　依照本办法第八条规定被列入经营异常名录的企业更正其公示的信息后，可以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移出经营异常名录，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查实之日起5个工作日内作出移出决定。  **第十四条**　依照本办法第九条规定被列入经营异常名录的企业，依法办理住所或者经营场所变更登记，或者企业提出通过登记的住所或者经营场所可以重新取得联系，申请移出经营异常名录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查实之日起5个工作日内作出移出决定。  **第十五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在企业被列入经营异常名录届满3年前60日内，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以公告方式提示其履行相关义务；届满3年仍未履行公示义务的，将其列入严重违法企业名单，并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第十六条**　企业对被列入经营异常名录有异议的，可以自公示之日起30日内向作出决定的工商行政管理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相关证明材料，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在5个工作日内决定是否受理。予以受理的，应当在20个工作日内核实，并将核实结果书面告知申请人；不予受理的，将不予受理的理由书面告知申请人。  　　工商行政管理部门通过核实发现将企业列入经营异常名录存在错误的，应当自查实之日起5个工作日内予以更正。  **第十七条**　对企业被列入、移出经营异常名录的决定，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十八条**　工商行政管理部门未依照本办法的有关规定履行职责的，由上一级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有关规定予以处理。  **第十九条**　经营异常名录管理相关文书样式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统一制定。  **第二十条**　本办法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二十一条**　本办法自2014年10月1日起施行。2006年2月24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23号公布的《企业年度检验办法》同时废止。 |